



수산분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소고

- 어항분야 진출을 위한 관련법 검토를 중심으로 -



박 성 우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서기관

C 1. 들어가면서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날 국토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도 시급하다. 세계화로 통칭되는 최근의 변화에 대하여 모든 나라들이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시급한 때이다. 좁은 국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다로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바다와 관련된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개별 업체 등은 많은 노력을 나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주변국가의 상황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중국도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물의 오염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서를 작성하

고 있는 한편,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2006년 유럽연합(EU)의 다량어 통조림 수입이 늘어났는데, 주요 수입대상국은 EU가 투자해서 공장을 세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다. EU의 다량어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다량어 자원감소와 소비증가로 인해 다량어가격이 상승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다른 국가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다량어 통조림 산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기존의 입어협정이 체결국의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여 2002년부터 협정국 모두 이득을 얻는 어업협력 협정을 추진하였다. 원양조업국(EU)의 경우 어획활동 기회증가, 고용 창출, 가공원료 조달 등과 같은 이점이 있고, 연안국(어업 협정대상국)의 경우 입어료 수입, 고용 및 서비스 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의 이익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도 임여협력협정으로 변화하여 정부가 임여료를 포함한 지원금을 제공, 원양어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중서부 태평양의 참치기구(WCPFC) 회의에 참석하여 보면 예전에는 조업국과 연안국간 색깔이 뚜렷이 구분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안국의 요청에 의해 각 조업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안국에 투자하는 등 사안에 따라 누가 조업국이고 누가 연안국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

수산분야의 해외진출은 세계화시대에 거역할 수 없는 명제다. 다만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환경의 보호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통하여 관련 국가와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으로 현지에 투자하여 국가의 수산업 보조금지급 제한을 뛰어넘고 무역 장벽과 환경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행정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직접투자나 펀드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업의 리스크가 다른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다 전문적인 펀드로 발전시켜 투자자에게 많은 이익이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해외수산펀드사업의 필요성과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사업 추진시 법적 근거로서 원양산업 발전법과 어촌어항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 2. 해외수산펀드의 법적 의의

가. 해외수산펀드의 의의

일반적으로 '펀드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투자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해외수산펀드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해외수산업과 그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종래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에 대한 간접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상품의 형태에 따라 개별 법률,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운영되었다. 이러한 기관별 입법체계에 따를 경우 대리인문제를 규율함에 있어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산운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대통령령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형태의 간접투자는 기능별 입법체계인 간투법에 따라 행하여진다.

나. 해외수산펀드의 제도화 필요성

최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원외교는 각종 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실상 '경제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등의 연안국에서 중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으로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서부 도서국가에 많은 원양업체들이 일찍부터 진출하여 소위 자원수탈형 어업을 일삼아 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동안의 가득 이익에 비해 투자를 소홀히 하여 연안국의 불만도 높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도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OECD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국제사회의 눈길이 끊지 않은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루아침에 우리 정부차원의 무상원조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바 직접 투자를 통해서나마 우리나라에 대한 연안국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은 자원외교의 근간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이를 자금은 자국의 자금조달 능력 혹은 투자자의 역량에서 나온다.

이때 투자자는 전문 투자회사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그 만큼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해외수산펀드의 리스크를 의식하여 소극적일 때 국가는 필요한 자금의 모집을 위하여 배분되는 수익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까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수산펀드란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영세한 수산업이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바탕을 둔 대형화, 전문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수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향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말하며, 원양어업관련사업은 위와 같은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상업포함)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원양어업의 혁신,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명예해양수산관제도의 운영, 원양어업관련 사업의 신고 및 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등이다.

나. 펀드관련 조항의 검토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의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조항이나 제26조 제2항 제5호의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개척”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와 제3호를 감안 할 때 원양어업자가 외국의 가공식품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를 내포하고 있는지는 명백하지 않다.

일본수산(日本水産)이 2007년 10월 1일자로 프랑스 가공식품업체인 시테마린의 주식의 59%를 취득하여 자회사로 인수하였다. 일본수산이 냉동·냉장 수산물 및 냉동야채 등을 생산하여 시테마린을 인수한 것은 수산물을 비롯한 냉동식품 등의 유럽시장 판매 확대를 목적

C 3. 원양산업발전법과 어촌어양법 검토

가. 원양산업발전법의 제정 연혁

수산업법과는 별도로 2007.8.3. 원양산업발전법을 제정한 이유는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책임 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산업이란 원양어업과 원양어업관련 사업을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표 1〉 원양산업발전법중 해외투자 유형의 보완 방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6조(보조 및 융자) ② 정부는 원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6. 해외 수산관련 기업의 인수나 어업권 인수 등	지원대상 추가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제 언

으로 원양산업발전의 단계로 볼 것이다. 우리의 기업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이나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보충해야 할 것이다.

원양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수산펀드를 개발하고 그 투자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정부가 원양 산업 발전기금을 조성,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해외수산 펀드에 투자하고, 민간투자자의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박펀드와 같이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원양산업협회의 사업에 해외 수산펀드 개발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와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15조의 사업 내용 중에 '해외수산펀드의 개발'에 관한 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 어촌·어항법

다양한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어촌과 어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2005. 5. 31 법률 제751호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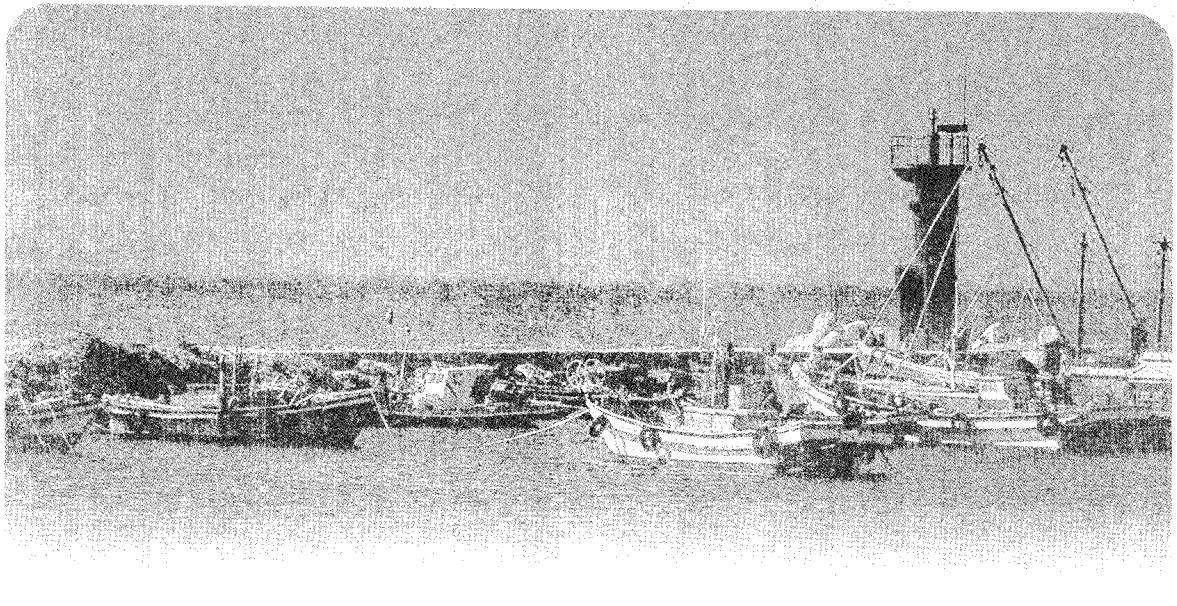
주요내용으로는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어항의 지정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상업비의 지원, 공익을 위한 처분, 손실 보상 및 한국어촌어항협회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후 '하천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공유수면관리법',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과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라. 어촌·어항법의 주요 내용

어촌·어항법의 목적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어촌·어항 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 어항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수산업의 발전은 수산업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이는 어촌과 어항의 개발에서 시작된다. 국내어항이든 지방어항이든 어항시설과 어항운영전산망의 현대화가 강조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과 어촌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





정하는 국가어항,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어촌정주어항으로 분류되므로 지정권자가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항개발사업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동법 제5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협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동법 58조의 제2항)

현행법 제58조 제1항에 나타난 협회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촌 및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어촌 및 어항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어촌 및 어항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안전점검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8.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상 적극적인 영리행위를 포함하는지 명백하지 않으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한 외교의 기초로서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 어촌·어항법의 한계

어촌·어항법의 목적 중 하나가 수산업의 대외 내지 국제 경쟁력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8조 제1항에 기재된 협회의 사업내용에 해외수산업 개발에 관한 자금이나 금융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인적 기반인 협회가 해외수산업 개발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기능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외 수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외 어촌 및 어항의 개발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

제 1언

〈표 2〉 해외펀드사업 추진시 어촌·어항법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8조(협회의 사업) ①협회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9. 해외어촌 및 어항개발 투자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수산펀드에 대한 투자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호 아래 9호를 추가하고 현재의 9호를 10호로 수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의 목적인 어촌·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에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58조 제1항의 사업내용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협회의 사업내용으로서 해외 어촌 및 어항개발 사업과 그를 위한 해외수산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촌·어항법 개정 방안은 〈표 2〉와 같다. 어촌과 어민의 경제적 이익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수산펀드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투자자에게 이득이 돌아간다면 수산전문가인 어촌과 어민들의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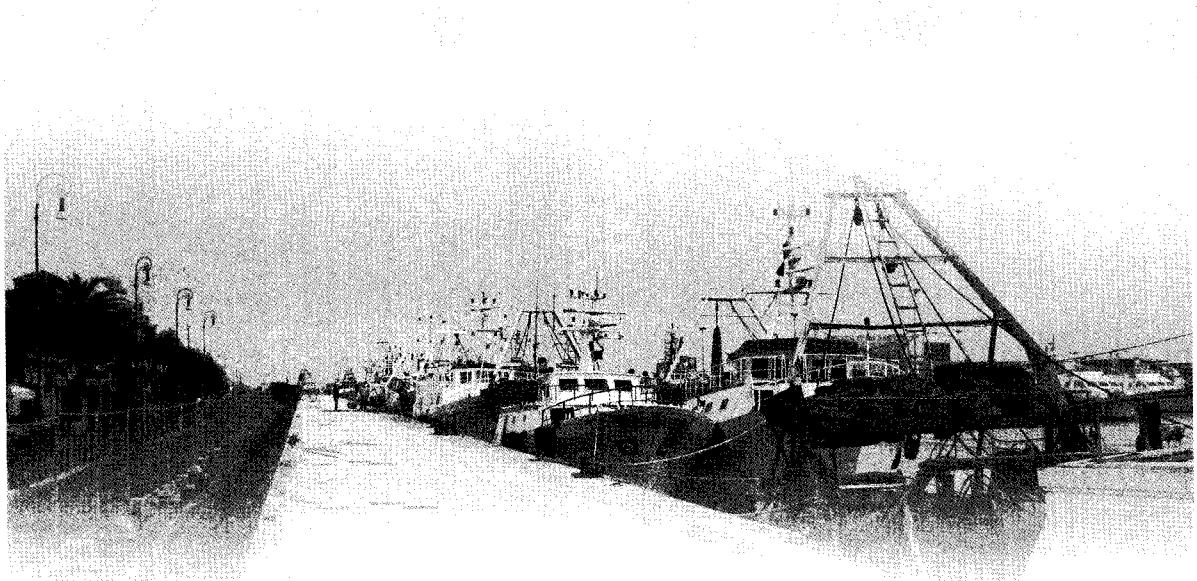
어촌과 어항의 개발사업을 플랜트수출처럼 해외에 수출하여 광물이나 농수산물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개발사업자체로서의 가치도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연안국의 수산자원의 개발이나 확보를 위한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협회의 기능이 국내의 어촌과 어항의 개발에 제한되어 있으나 공장의 플랜트수출처럼 해외에 진출하여 어촌과 어항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 어촌과 어항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뿐더러 연안역 정주 공간으로서 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산 기반으로서 그리고 문화와 관광 등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및 신도시 개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알려지면서 베트남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신흥 개도국에서 신도시 개발을 의뢰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한국어항협회가 연안국에서 어항개발을 의뢰받을 날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C 4. 맷으면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태평양 연안국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에 있어서도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해외에서 수산자원을 확보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산부문의 대규모 해외투자를 통해 적극적인 자원 확보 노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해외의 어장에서 한국 국적의 어선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어항을 해외에서 건립하는 사업은 금액이 크지만 직접적인 투자수익을 얻기에 한계가 있어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투자에 EDCF 차관 지원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기업이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들 배후부지의 활용에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수산자원펀드의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산투자의 경우 보통 어선, 가공공장, 냉동창고, 어항시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어선의 경우 신조할 곳은 거의 정해져 있어 투자금액만 문제가 되며 가공공장의 경우도 필요한 부품은 조달 등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어항시설의 경우는 반드시 그 생산이 이루어 어지는 현지에서 필수불가결한 선결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어항개발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게는 일종의 불魯오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시급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본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과 업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모든 여건을 선도적으로 받아 들여 수산자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수산물을 통한 해외시장 공략 정책에 시동을 걸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